

“양계장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 취재 / 함경숙 기자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발전함에 따라 각종 설비는 근대화(기계화)되고 거대화되어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도 1953년에 제정·공포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 의거 안전·보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1년 12월31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양계산업도 석유화학공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쳐 웬만한 규모의 농장에서는 계사시설의 자동화를 꾀하며 기계화를 도입, 활용하여 나름대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각 농장에서는 자동화 시설 설치로 심각한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장점과 자동급이기, 급수기, 스크레퍼 및

전기시설 등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되는 각종 재해의 위험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양계산업은 고도화된 전문성을 가진 다른 산업과는 달리 규모가 영세하여 재해발생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미미했기 때문에 산재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가입요령, 자격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몇몇 양계장에서는 종업원의 기계사용상 취급 부주의나, 잘못 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과중한 치료비 부담 및 시간적인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되자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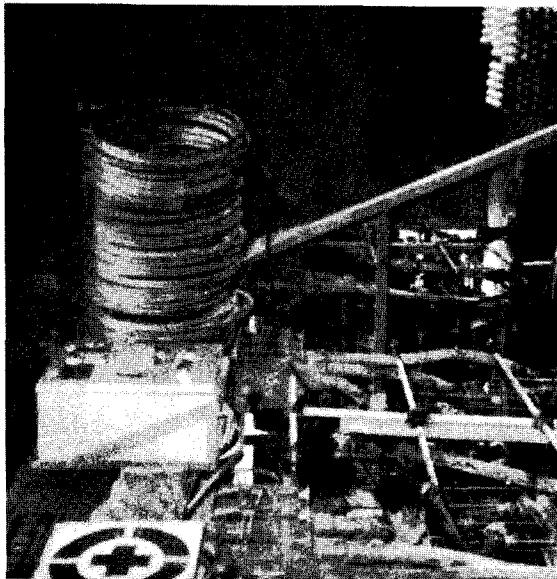
이에 각 농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어떤 과정과 조건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한 농장을 예로 들어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산재보험의 개념

우선 ‘산업재해보험제도’란 사회보험의 한 분야로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근로자를 불의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매년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국가가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대신하여 신속, 공정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근로자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험부담까지 덜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64년 실시된 이래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혜대상의 확대와 보상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해 오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평가이다.



기계화, 자동화가 된 결과로 있는 곳에 있어서는
인력에의 부담이 경차증가되고 있어 사용자는
구입한 기계설비의 이전성 확보와 유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실시된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양계장에서의 산재 발생사례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생산 향상을 꾀하기 위해 각 양

계장에서는 기계화를 도입,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 기계·기구업체의 대부분이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정성이 보장된 단계까지 그 수준이 도달하지 못해 각종 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쉽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전부터 경기도 광주지역의 몇몇 농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가입농장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무갑리에 소재한 삼우농장(대표 최준구)의 경우 작년에 자동급이기, 급수시설을 비롯하여 스크래퍼, 계분처리장 등 모든 계사시설을 자동화로 설치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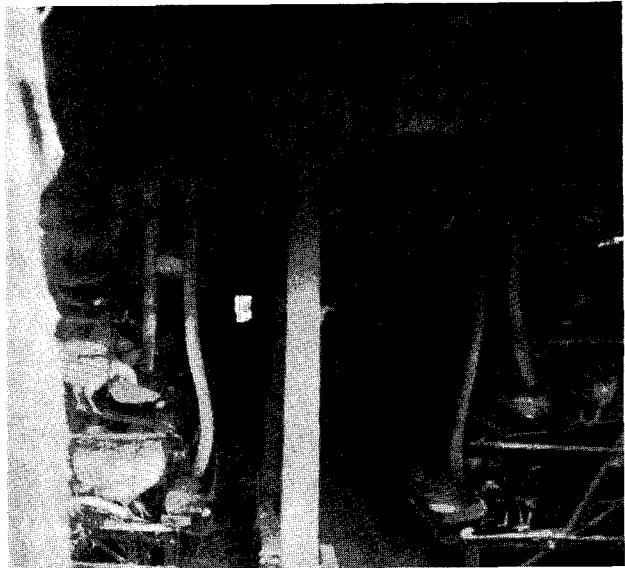
그러던 중 지난 3월 종업원이 호퍼식 자동급이기를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알을 건던 중 기계가 발을 덮쳐 발가락중 일부가 으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최준구 사장은 “그 당시만 해도 산재보험제도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가입하려는 의사가 별로 없었으나 바쁜 일과 중에 재해를 당한 종업원의 치료, 수술 등에 일일이 따라 다니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소 잊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고발생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가입동기를 밝힌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광주군 실촌면 전업리에 위치한 강상진씨 농장에서도 자동급이기의 레일에 발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예로 산재보험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치료,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 치료기간동안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었다.

- ▶ 현재까지 발생된 양계장의 산업재해중 자동급이기에 사용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아 기계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발등이나 발가락을 다친 예가 이 부분에 의한 재해발생이 많다.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한 삼주 농장(대표 정창각)은 지난 87년 12월에 산재보험에 가입, 양계 업계에서는 비교적 일찍 눈을 뜬 농장인데 금년 5월에 자동급이기 시설로 인해 종업원이 발 등을 다쳐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로 산재가 적용되었는데 1개월간의 치료비 및 1개월간의 휴업급여(임금의 60／100 지급 현재는 70%)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파주의 교하 농장(대표 한명복)을 비롯하여 광주, 화성 등 주위의 몇몇 농장에서도 산재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인식,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



진 중에 있다.

산재보험가입자격 및 절차

산재보험이 가입자격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 조건에 따 임의적용과

당연적용가입으로 구분된다.

당연적용 가입은 별지2호 서식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사업개시일 또는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5인 이내 사업장(특히 상



△ 산재가 많이 발생했던 자동급이기의 안정성 결함을 보았, 제사와
제사 사이의 중앙에 데일이 설치되지 않은 자동급이기

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농업부문은 예외)일 경우 임의 적용가입에 해당되어 그 가입자격 및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개시일부터의 출근부, 임금대장, 갑종근로세명세서, 작업공정도,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서 및 경리장부, 부가가치 공급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보험가입비는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보험료는 사업종류와 임금에 따라 산정된다.

공인노무사제도의 활용도 바람직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가입절차 및 필요한 서류

구비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공인노무사제도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과 제출의 대행업무 및 사업체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 및 대장 등 서류작성 대행업무를 말한다.

한편 산재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노동청(사무소) 관리과(산재보험과) 또는 보상과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지역 양계농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남 공인노무사 사무소 유병오 대표는 “종래의 보험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국가가 일반화계에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어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책임보험적 성격을 벗

어나지 못했으나 지난 3월29일 부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왕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책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산재발생의 사전방지와 극소화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적으로 각종 혜택의 소외대상이었던 양계산업도, 양계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에 좀 더 관심을 가져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